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
[시행 2020. 6. 11.] [국토교통부령 제735호, 2020. 6. 11., 일부개정]

국토교통부 (공간정보제도과) 044-201-3485
해양수산부 (해양영토과) 044-200-5358, 5357

제110조(권한을 표시하는 허가증) ① 법 제101조제9항에 따른 허가증(이하 "허가증"이라 한다)을 발급(재발급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96호서식에 따른 측량 및 수로 · 토지이동조사 허가증 발급신청서를 관할 특별자치시장, 특별자치도지사, 시장 · 군수 또는 구청장(이하 "발급권자"라 한다)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발급권자는 별지 제97호서식에 따른 허가증을 발급하는 경우 별지 제97호의2서식의 측량 및 수로 · 토지이동조사 허가증 발급대장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. 다만, 기존에 발급 받은 허가증이 있는 경우에는 그 허가증을 반납 받아 폐기하여야 한다. <개정 2014. 1. 17.>

[전문개정 2013. 6. 19.]

부칙 <제735호, 2020. 6. 11.>

이 규칙은 2020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.